

# 소방안전관리 규정

2014. 3. 13. 제정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임과 책임) 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한다.

② 각 건물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건물 화기관리책임자를 두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
1. 건물 화기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기관장으로 한다.
2. 각 실별 화기관리 “정” 책임자는 실 용도에 따라 사무직원, 교수, 책임 연구원 등으로 하고, “부” 책임자는 각 실별 화기관리 “정” 책임자가 지명한다.
3. 임대업체의 화기관리책임자는 업주로 하되 매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업주가 위임한 지점장(대리인)으로 한다.

## 제2장 소방안전관리 임무

제3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)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소방시설,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관리
3. 소방훈련 및 교육
4. 화기취급의 감독 및 자위 소방대 조직
5.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

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말까지 다음해의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.

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원활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 화기관리책임자 및 각 실별 화기관리 “정·부” 책임자, 임대업체 화기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조(건물 화기관리책임자의 임무) 건물 화기관리책임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 실별 화기관리 “정·부” 책임자 지도·감독

## 소방안전관리 규정

### 2. 화재예방 및 화기단속

3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·관리

4.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

제5조(각 실별 화기관리 “정·부” 책임자 임무) 각 실별 화기관리 “정·부” 책임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냉·난방기구 등 전열기 안전관리

2. 인화성 및 가연성물질의 반입·반출 통제

3.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·관리

4. 최종 퇴실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지도

5. 화재위험성 발견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

제6조(임대업체의 임무) ① 업주는 화기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유지·관리·점검한다.

② 전항의 화기관리책임자는 이 규정 제4조, 제5조,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당직근무자의 임무) ① 야간 및 휴일 근무시 당직근무자는 화기관리책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진다.

② 종합상황실 당직근무자는 각 건물 소속회사 경비근무자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휘·감독한다.

## 제3장 소방교육훈련

제8조(소방교육훈련)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직원(협력업체 포함)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내용에 화재예방, 소화요령, 인명대피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을 포함한다.

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서, 안전협회 등의 전문기관에 교육강사를 요청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제4장 자위소방대

제9조(자위소방대 조직·운영) 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조직·운영한다.

② 자위소방대에는 대장, 부대장, 지휘반, 진압반, 구조구급반, 대피유도반을 두며, 각 부서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.

## 제5장 소방시설의 유지관리

제10조(소방점검) ①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,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한다.

제11조(유지보수)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점검결과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선, 개조, 이설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.

② 소방시설의 정비 및 공사는 시설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.

## 제6장 상벌

제12조(상벌) 방화관리 및 소화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,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시에 태만하거나 화재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.

## 제7장 보칙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 관련 법령 및 국가 화재 안전기준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4. 3. 13. 제정)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